




기안공지

분류기호 문시번호	법무 02124-62	(전화: 713-1156)	시행성 특별회급
보존기간	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 7		
시행일자	1990		
보조 가 의	부서장 기획관리 사무담당관	참조 사 관	  
기안책임	법제처장	문답 69/호	
경 수 합 조	각 안 참 조	법 제 처 장 의	
제 목	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임규정증기정규정		
(제 1안)			
수 신 처 : 법무부			
제 목 : 같은건			
1.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임규정증기정규정			
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의 의거 및 실시에 관하여 시 보에 게재 신청하고자 합니다.			
참 부 : 방정안 1부			
(제 2안)			
수 신 처 : 공보관			

제 목 : 시보 게재

결재

1. 별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문명 제 69/ 호 1부. 끝.

(계 3안)

수 신 :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

제 목 : 문명 발령

1. 교육01141-39 (90.1.18)호의 관련안

2.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나 시행에 착수없도록 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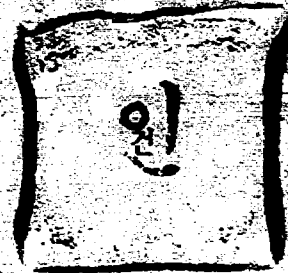
첨 부 : 서울특별시 문명 제 69/ 호 1부. 끝.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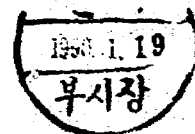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1월 20일

서울특별시장



3413



서울특별시훈령 제 69/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"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고득점자 순위로 3인에게 수여한다." 를 "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이 2주이상 이고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성적우수자와 우수본임에게 수여한다."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 3 조 제목중 "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"을 "시상시기 및 시상방법"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.

1.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은 30만원
2.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50만원
3. 간부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인 장기과정은 100만원

제 4 조 제1항중 "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" 을 "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원"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"시상금의 집행"을 "시상의집행"으로 "시상금지급총액" 을 "지급총액"으로 한다.

제 7 조 제2항 제2호중 "시상금지급금액"을 "시상금액"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.